

# 우리 대학의 성희롱 방지 노력은 100점 만점에 몇 점?

김영희 | 서강대 성평등 상담실 상담교수, 한국 대학성평등상담소 협의회 대표



‘과 MT에서 모두가 만취하여 선배와 둘만 남게 된 상황, 갑작스레 선배가 나에게 사랑 고백을 하며 나를 껴안았던 순간, 선배를 밀치고 그 자리를 간신히 빠져나왔으나, 그 날 이후 나의 의사에 반한 선배의 행동이 자꾸 떠오르며 수치스런 감정이 올라와 밤잠을 설치게 되고 수업집중도 안 된다. 선배를 학교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하는 선배를 보면 너무 화가 나고, 이렇게 힘든 나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누구에게 이 사정을 이야기해야 할까?’

또 다른 상황, ‘이번 학기 취업 관련 교과목을 맡고 계신 우리 학교 겸임교수께서 내가 제출한 과제에 대해 코멘트를 하고 싶다며,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고 자꾸 연락을 주신다.

수업을 같이 듣고 있는 친구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유독 나에게만 여러 번 문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수업에서 교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게 두렵다. 도대체 어디에다 도움을 청해야 할까?’

두 질문에 대한 정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대학 내 성평등상담소(학교에 따라 ‘성희롱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인권센터’, 등으로 명명되며, 필자는 이하 성평등상담소라 지칭)를 찾으면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 중 어느 한쪽이 교내 구성원인 경우라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어려움이 있거나 정보가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어 대학 성평등상담소의 문을 두드

리는 것이 최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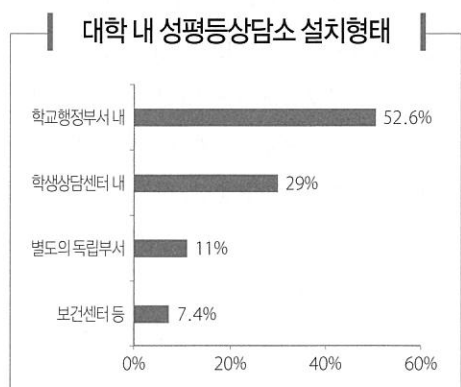
‘성(性)’이라는 단어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용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종종 보도되는 대학 내 성희롱 사건들과 성적 피해들은, 성에 대해 침묵할 수만은 없는 상황들이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갓 성인이 된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에게 대인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고민과 문제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성교육에서 접했던 것보다 훨씬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낯설고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보통 이런 고민을 가까운 친구에게 털어놓곤 하지만 또래 친구가 줄 수 있는 조언과 도움이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 학교마다 학생들이 성에 대한 고민을 편하게 상담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학 내 성평등상담소를 두고 있다.

대학 내 성평등상담소는 피해자에 대한 고충 상담과 심리적 지원부터 시작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사건 처리를 진행한다. 사건당사자간의 비공식적 처리를 원한다면 사실 확인 후 당사자간의 합의중재에 나서고, 학교측의 공식적 처리를 원한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 조사와 심의를 진행하여 피해자 보호와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 가해자 조치나 징계의 절차가 진행된다.

대학 내 성평등상담소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999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0년 교육부가 대학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대한 학칙 규정 제정과 고충전담창구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서

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전국 주요 대학들이 잇따라 대학 내 학생 생활상담소와는 별도 조직으로 독립된 전담부서인 ‘성평등상담소’를 개소하였다.

현재까지 2~4년제의 전국 대부분의 대학(교)에는 성희롱 방지를 위해 대학 성희롱 고충처리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남녀 각 1인의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두고 있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학실태조사에 따르면, 52.6%는 학생처·총무처·교무처와 같은 학교행정부서 내에, 29%는 학생상담센터 내에, 7.4%는 보건센터 등에 두어 성희롱 고충상담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반면에, 11%는 별도의 독립부서를 두어 성희롱 고충상담 전담인력이 학내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성인지 관점에서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1

대학 내 성평등상담소가 하는 일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물」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대학성희롱 고충상담이나 사건처리에만 그치지 않는다. 성인 지 교육(Gender Sensitivity Training)을 통해 대학 구성원의 성희롱 문제인식을 높여 성희롱 사건발생을 적극 예방하고 더 나아가 성평등 의식고양과 실천을 지향하며, 개인의 섹슈얼리티와 연결된 다양한 영역의 정상담을 비롯해 대학 성평등 문화조성 캠페인·공모전·전시회·영상회·토론회·집단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직원, 교원들의 젠더 감수성을 높이려는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평등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도 대학 내 성평등상담소의 주요 역할이다. 이에 대한 성과로서 일부 대학에서는 교과목 강의평가 설문에 ‘성에 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성평등한 관점에서 강의가 진행되었는가’라는 내용의 성인지 문항을 추가하여 매학기 교과를 수강한 학생들과 수업교수에게 예방적 차원의 각성을 높이고 있으며, 주요 학교정책을 결정하는 보직제도에 있어서도 성평등 자문교수제나 성평등 전문위원제를 도입하여 대학(총장, 학장)의 성평등 실천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성평등 정책실현의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다.

또한 안전한 캠퍼스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도 대학 성평등상담소의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이다. 대학 시설의 야간 운영이나 지역사회와의 산학협력 등으로 대학 공간이 24시간 개방됨에 따라 학교가 성범죄로부터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서 학내 안전위험지역을 파악해 가로등이나 긴급전

화 설치, 조명시설 점검과 조명등 청소 뿐 만 아니라 건물 내·외 시설 도색 등을 통한 보다 밝은 시설 유지, 화장실 하단 칸막이 폐쇄나 비상벨 설치 등도 대학 성평등상담소의 고충상담 사례분석을 통해 대학 시설 관리부서에 제안되어 몇몇 대학에서 이미 추진한 바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학 내 성평등상담소의 노력들은 전문가 한 사람의 아이디어나 단기간에 이루어낸 성과는 결코 아니다. 국가가 고시한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 지침」에 따라 2000년대 초반 각 대학마다 학교 상황에 걸맞는 다양한 형태의 성평등상담소가 설치되었지만, 대학 성희롱 예방을 위해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추진해야할지, 대학 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구체화된 매뉴얼이나 자료는 전무했다. 이에 대한 자료공유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각 대학간 네트워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발족된 단체가 바로 지금의 「한국 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http://www.equaluniv.net>, 2003년 「전국 대학성폭력상담실무자협의회」로 발족되어, 2012년 총회에서 현재 명칭으로 변경됨)이다.



본 협의회는 이사회(대표 김영희, 서강대 교수 / 부대표 원준재, 인하대 연구원 / 총무이사 이연희, 청주대 연구원 / 학술이사 노정민, 고려대 연구원 / 대외협력이사 홍상희, 이화여대 연구원 / 법무이사 김대명, 대구과학대 교수 / 감사 강희순, 순천대 팀장 / 감사 이혜경, 공주대 팀장)를 중심으로 본회 사무소와 지회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대학이 보다 성평등해 지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공유·확산하고, 이를 시행하는 대학담당자들을 위하여 대학간 정보교류, 연구, 자문의 채널로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협의회 조직구성

본회(서울: 서강대 소재)  
 중부지회(경기·인천·강원: 인하대 소재)  
 충청지회(충남·대전·충북: 공주대 소재),  
 경상지회(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  
 : 대구과학대 소재)  
 전라지회(전남·광주·전북·제주: 순천대 소재)

#### ▶ 대학 구성원별 성평등 제고를 위한 연구, 연수 등 교육사업

: 해마다 년2회 이상의 연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하계 워크숍은 본 협의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전국 대학 규모의 '대학성희롱 고충상담원 워크숍'으로, 대학의 성희롱 예방 업무 관련하여 실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 대학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영상개발과 제작CD 배포

: 대학성희롱 방지 정책 시행 13년이 경과된 오늘, 대부분의 대학구성원들은 동료관계, 선후배관계, 교수학생관계, 직급관계에서 어떤 언행들이 부적절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를 머리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막상 본인을 포함하여 주위에서 발생되면 이는 관계라는 친밀성 때문에 성인지 관점(Gender Perspectives)이 흐려지거나 가해자-



피해자간의 힘의 위계관계 때문에 피해를 드러 내기가 어렵고, 혹은 머릿속으로는 성희롱이라 생각해도 술로 인해 이성이 흐려지면서 몸을 제어하기 어려워진다. 우리가 반복된 학습으로 빨간 신호등을 보면 몸이 먼저 멈춰지는 것처럼 성희롱과 성매매 예방 또한 대학 내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의 권력에 대한 감수성과 건강하게 관계맺고 소통하는 일상의 변화와 몸의 변화가 동반될 때 개인의 평등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대학사회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취지에서 각 대학에 실효성 있는 교육매체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의회는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를 설득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 그리고 협의회의 연구재

원으로 「대학성희롱예방교육영상 : 함께하는 대학, 행복한 시작(2005)」, 「대학 내 성희롱예방 온라인교수학습매체개발연구 : 교수용 기본과정 / 학생용 기본과정(2006)」, 「대학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교수용 심화과정 / 학생용 심화과정 / 직원용(2007)」, 「대학 성희롱예방교육영상 : 고정관념탈출 넘버원! / 우리평등할까요?(2009)」, 「대학성희롱예방교수교육영상 영문판 :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Guide(2009)」, 「교육기관 성매매예방교육영상 : 기본과정(2010)」, 「대학 성희롱예방교육영상 : 스마트한 대학, 스마트한 성문화로」를 연구하고 교육영상 CD를 개발하여 전국 대학에 보급하고 있다.



▶ 피해자 치유회복상담과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상담

: 최근 조사된 대학 생활영역에서의 성평등 실천 실태조사(2011. 한국어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남녀대학생(5,555명)의 22.5%가 성희롱 피해를 경험하였고,

성적농담(20.9%),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18.6%), 외모비유나 평가(12.4%), 원치않는 성적 질문(6.7%) 등의 피해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담현장에서는 이는 관계에서의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이나 성추행, 준강간(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강

간시도가 이에 해당됨)사례가 가장 빈번하며, 그 다음으로는 성차별적이거나 성비하적인 교수·직원의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최근 화장실·탈의실 몰래카메라 촬영이나 특정 신체부위를 주시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고충상담과정에서는 피해자의 감정을 다루어 치유회복을 돕고, 피해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상황에 대한 주체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존중하여 자신의 가해행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의 상처를 공감하여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써 본인의 성의식을 높이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성인지 상담 프로그램을 각 대학에 안내하고 있다.

▶ 대학 성평등 문화조성 및 캠퍼스 안전 환경조성

: 각 대학의 성평등 문화조성 및 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는 구체 사례들을 적극 홍보하여 대학 내 성희롱의 발생 맥락에 놓여 있는 권력관계와 젠더불균형적인 대학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개인의 평등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에게 내면화된 성별 고정관념·편견·차별의식을 버리고, 자신의 친밀함의 경계를 견고히 하고 자기표현을 높일 수 있는 성적으로 평등한 대학문화조성과 캠퍼스 안전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 정부 유관기관과의 협력

: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대학 성희롱 예방업무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과 간담회를 다수 개최하였고, 정부 부처의 성희롱 예방 교육영상물 개발자문 뿐만 아니라, 각 대학 성평등상담소의 위상강화를 위한 관련 부처 정책 및 법률제·개정을 제안하였고, 올해는 본 협의회의 여성부 산하 비영리민간단체(NGO) 등록을 추진 중에 있다.

▶ 대학 내 성희롱 사건처리의 합리적인 절차 자문

: 연일 대학 성희롱 사건이 인터넷을 달구는 가운데, 어느 대학은 사건이 신고접수되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곤혹스러워 한다. 성희롱 사건이 불거졌을 때 “성희롱할 의도가 있었다”고 말하는 행위자(가해혐의자)는 아무도 없다. “그것은 단지 친질이고 배려이고 격려였다”고 말한다. 대학 성희롱사건은 사건당사자의 주장이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고, 심의결과에 따른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조치·징계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문제이다.

사건을 신고접수 받은 대학의 많은 경우가 본 협의회에 사건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 있어, 최근 1~2년 동안 본 협의회가 요청받는 한 달 자문 횟수가 한 자리 수 이상으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사건을 다루어야 하는 학교측은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통념들로 인해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목하여, 사건처리과정 초기부터 사건당사자

및 관련자, 사건조사자, 사건심의회들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서약 및 사건처리 비공개 원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희롱을 불법행위로 규정한 지 10년 이상이 흘렀지만, 여전히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논란이 많다. 그동안 대학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합리적 사람(피해자의 95%가 여성)의 관점에서 사건을 심의하여 왔다. 그렇지만 성희롱을 심의하는 합리적인 사람의 감수성의 차이에 따라 입장이 차이가 보일 때는 누구의 입장을 따라야 할지 고민스럽다. A는 성희롱이라고 느꼈지만 B와 C는 이것이 성희롱이 아니라고 느낄 때 객관성의 부재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학교측의 결정에 불복의사를 밝히는 가해자(피신고인)가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학교가 가해자와 법리적 논쟁까지 벌여야 하는 현 시점에서, 학교가 사건을 심의

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을 국가가 왜 규제하였는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이제는 판단근거로서 성희롱의 보호법익을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성희롱 판단의 법적 근거는 성적언동, 굴욕감과 혐오감, 그리고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관점이다. 이에 덧붙여 사건당사자간의 업무지위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그 행위가 피해자와 학교 공동체 내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는가의 여부이다. 그러한 언동을 하게 된 행위자의 맥락과 그것을 접한 피해자의 맥락에 대한 깊이있는 젠더분석을 통해 그 행위의 의미와 행위가 피해자 및 학교공동체에 미친 영향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서구 대학에서는 면담시간 내내 교수 연구실 문을 열어두는 ‘open door policy’ 정책을 갖고 있다. 다소 물인정해 보이기도 하지만 교원(직원)와 학생, 선배와 후배 이전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문화가 한국 대학에서 자연스럽게 자리잡을 때까지는 우리 대학에서도 실천 해볼만한 정책이 아닐까!

## 필자소개

김영희 | 서강대 성평등상담실 상담교수

한양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간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경북대 간호과 여성건강간호학 교수, 연세대학교 성폭력상담실 전임상담원, 연세대 젠더연구소 전문연구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서강대학교 성평등상담실 상담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 대학성평등상담소 협의회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여성건강 간호학」(공저), 「생활의학」(공저) 등이 있으며, '대학 성희롱 예방 온라인 교수학습매체개발연

구- 교수용/학생용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교육기관 성매매 예방 교육영상CD 개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영상CD 개발' 외 다수가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대학성문화와 섹슈얼리티, 성희롱예방, 성매매예방, 젠더파트너십 등이며, 2003년 전국 대학성희롱 상담실무자 협의회(2012. 7. 한국 대학성평등 상담소 협의회로 개칭)를 발족하여 대학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연구, 자문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정부, 기업, 학교 등 각계에서 성희롱예방/성매매 예방/양성평등 교육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다.